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 1061 支

제출일자 : 2014. 1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.

2. 개정이유

65세 미만 군비 지원(월 3만원) 참전명예수당 조정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액 지원(안 제3조)
 - ※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에 따름
- 나. 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20일 이내 에서 매월 25일경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다.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매년 1월중에서 매월로 변경하고,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를 개인에 통보로 변경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성별·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10. 10. ~ 10. 31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"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"을 "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"을 "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"으로 한다.

제3조 각호 외의 부분" 중 "달성군수(이하 "군수"이라 한다)은"을 "달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3만원"을 "5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법"을 "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하며, 같은 호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 [별지 제1호] 서식에 의거"를 "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지급누락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중 "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,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20일 이내에"를 "참전명예수

114 (제232회-제9차)

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[별지 제2호] 서식에 의거"를 "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매년 1월중에"를 "매월"로 하며, "개인 또는 관련단체"를 "개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4조"를 "제4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 [별지 1호] 서식에 의거"를 "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신청인 또는 관련단체"를 "신청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참전유공자는 「참전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 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	제2조(정의) <u>「참전유공자 예</u>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제3조(지원사업) <u>달성군수(이하</u> "군 수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참전유공자에게 월 <u>3만원</u> 의 참전명예 수당 지급 단,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 <u>거</u>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4. (생략)	제3조(지원사업) <u>달성군수(이하 "군</u> 수"라 한다)는
제4조(지원대상자) ① (생략) ②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. 1. <u>법</u> 제3조제2항에 <u>의거</u>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 2. ~ 3. (생략)	제4조(지원대상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1. <u>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</u> 한 법률」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[별지 제1호]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<신설>	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
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에,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 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④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[별지 제2호]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	<u>합지 제2호 서식]에 따라</u>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군수는 제5조제1항에 <u>의거</u>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<u>매년 1월중에</u>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<u>개인 또는 관련단체</u> 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

현 행	개 정 안
③군수는 <u>제4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지급	③ <u>제4조제2항</u>
부적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지	
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	
제7조(신청사항 변경) ①제5조제1항에	제7조(신청사항 변경) ① 제5조제1항에
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	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
이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변경	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에 해당하는 변
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<u>[별지 1</u>	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<u>[별지 제1</u>
호]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.	호 서식]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	②
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<u>신청</u>	<u>신청인</u>
<u>인 또는 관련단체</u> 에 통보한다.	·

참고 1

관계법령(발췌)

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

-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,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-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